

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(박덕흠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2622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18. 3. 23.

발의자 : 박덕흠 · 신보라 · 강석진

박명재 · 김성찬 · 홍철호

경대수 · 박성중 · 이원욱

조정식 · 이주영 · 이학재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라 주택도시기금의 운용·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주택도시보증공사(이하 “공사”)는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주택임차자금대출, 전세금안심대출, 정비사업자금대출 등의 상품(이하 “공사보증부대출”)에 대하여 공적 보증을 실시하고 있음.

한편, 바젤은행감독위원회의 국제기준인 「거액익스포저(Large Exposure) 측정 및 감독체계 기준서」에 따른 규제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면 공사보증부대출을 취급하는 시중 은행에 대한 공사의 보증한도는 위원회가 정한 산정방식에 따라 약 32조2천억원으로 제한되나, 공사가 이러한 공사보증부대출에 보증한 금액은 2017년 6월 기준 약 63조2천억원으로 바젤은행감독위원회가 정한 보증한도를 1.9배 초과하고 있어 향후 공사보증부대출에 대한 보증이 중단될 우려가 있는 상황임.

이와 관련하여, 정부가 관련 법률에 따라 공사의 결손을 보전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공공기관의 경우 바젤은행감독위원회의 규제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하여도 정부가 손실을 보전하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공적보증이 중단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공사는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이 생긴 경우에는 공사의 이익금인 보증이행준비금과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되, 보전하고도 부족한 금액은 “정부가 보전”하도록 함으로써 공사가 각종 보증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국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29조제3항 신설).

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주택도시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9조의 제목 “(이익금의 처리)”를 “(손익금의 처리)”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공사는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이 생긴 경우에는 제1항제 3호에 따른 보증이행준비금으로 보전하고,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할 때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되, 보전하고도 부족한 금액은 정부가 보전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9조(<u>이익금의 처리</u>) ① · ② (생 략) <u><신 설></u></p>	<p>제29조(<u>손익금의 처리</u>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 <u>③ 공사는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이 생긴 경우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보증이행준비금으로 보전하고,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할 때에는 같은 항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되, 보전하고도 부족한 금액은 정부가 보전한다.</u></p>